

선	기관의 장
람	



제 704 호

2006년 8월 7일 월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71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 3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72호(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
규칙) 7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97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공개
명단공고) 1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898호(시설공사입찰공고(노후및부적합보안등정비
공사)) 11

회								
람								

규 칙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8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671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중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를 ”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로 한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중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를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하고,

②“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로 하고,

③“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로 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중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를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로 하고,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발언할 수 있다.”로 한다.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중 ①“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를 “의장은 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하고,

②“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

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를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하고,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를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로 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를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로 한다.

제 86 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의 개정(2006. 4. 28)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중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
 - (안 제70조 제1항)
 - (안 제71조 제1항 내지 제3항)
 - (안 제72조 제1항, 제2항)
 - (안 제82조 제1항, 제2항, 제4항)
 - (안 제85조 제1항)
 - (안 제86조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윤 태 진

2006년 8월 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 672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소위원회)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개최의 통지)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통고)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위임)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006. 4. 28)의 개정으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칙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 내지 제11조)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97호

공 고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공개 명단

구 분	분 야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위촉일	비 고
대표협의체 위 원	구의회	남동구 구의회 의원	박강석	남	2006.8. 7	
실무협의체 위 원	사회복지 실무담당	남동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협력팀장	조현주	여	2006.7.14	
실무협의체 위 원	보건의료 실무담당	남동구 보건소 의약팀장	정상원	남	2006.7.14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6 - 898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노후 및 부적합 보안등 정비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구월1동외 6개동 일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개요 : 노후 보안등 교체 82개소, 수신기교체 565개소
- 설계금액 : ₩99,561,000원(추정가액 90,510,000원 부가가치세 9,051,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08월 08일(화) 09:00~ 08월 17일(목요일)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08월 17일(목요일) 16: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전기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은 총액인 (₩99,561,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2005년도) : 부채비율 162.55% 유동비율 131.79%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니다.

-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건설과 토목팀(032-453-2748)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8월 0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 경리관